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2020. 3. 6.

순 서

I. 고용위기지역 제도 개요	1
II. 그간 경과	2
III. 지원기간 연장요건 검토	3
1. 지원기간 연장요건 개요	3
2. 정량요건(1·2유형) 충족여부	4
3. 정성요건(3유형) 충족여부	6
4. 검토의견	8
IV.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안)	9

〈붙임1〉 고용위기지역 관련 법령 조문

〈붙임2〉 고용위기지역 모니터링 회의 결과

〈붙임3〉 고용위기지역 주요 고용지표

〈붙임4〉 고용위기지역 지원 주요 내용

I. 고용위기지역 제도 개요

□ 목적

-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 집중 지원

□ 법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 지정기준(고시 제4조제1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및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사유) 등의 증감 및 경제·산업·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위기지역 내 사업주, 근로자 및 실업자 등
- (지원내용) ①근로자 생계부담 완화 및 재취업·직업훈련 기회 확대
②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 유지 ③지역 일자리 창출 등

* 예: 사업주 훈련지원 및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장 휴업·휴직시 지원수준 인상,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

□ 지원기간(고시 제3조 및 제7조제2항)

- 최초 지원 2년으로 하고, 1년의 범위에서 두 번* 연장 가능

* 현 7개 고용위기지역은 적용례에 따라 금번 포함 두 번의 연장이 가능한 상황

- 고용사정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고용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Ⅱ. 그간 경과

- '18.4~5월 조선업 불황,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위기 대응을 위해 7개 지역을 1년 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이후, '19.4~5월에 모든 지역의 지원기간을 1년 간 연장

* ('18.4.5 지정, '20.4.4 지원기간 만료) ①전북 군산시, ②울산 동구, ③경남 거제시, ④통영시, ⑤고성군, ⑥창원 진해구

('18.5.4 지정, '20.5.3 지원기간 만료) ⑦목포·영암

-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합동대책 발표('18.4.5) 이후, '18년 추경 예산 편성(총 952억원, 5.21) 등 대책 추진의 재원을 확보하고,
 - 지난 2년 간 고용위기지역 근로자·실직자의 고용유지, 재취업 및 생계안정,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실시

□ 지원실적

- (사업주 지원) 사업장 휴업·휴직 시 지원수준 인상, 한도상향 및 사업주 훈련지원,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등
 - * 고용유지지원금(556억, 약 1.6만명), 사업주 직업훈련(226억, 약 14.5만명), 고보·산재 보험 납부기간 연장(221억), 장애인 부담금 납부유예(12억) 등
- (근로자 지원) 훈련기간 중 구직급여의 100% 지급(훈련연장급여),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확대 등
 - *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97억, 2,093명),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46억, 823명), 내일배움카드 훈련 참여(300억, 2.7만명) 등
-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고용촉진장려금(인건비의 50%) 및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연 9→14백만원) 확대, 청년센터 설치(군산·통영) 등
 - * 지역고용촉진지원금(689백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위기지역 매칭비 전액 면제, 군산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신규 설치 등

👉 '20.4~5월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만료를 앞두고, 모든 지역에서 지원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

* 연장신청서 접수: 울산 동구(2.4), 군산(2.19),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목포·영암(2.20)

Ⅲ. 지원기간 연장요건 검토

1 지원기간 연장요건 개요

□ (근거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의 지원기간을 각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음

□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 지정 요건 >

유형	요 건
1유형 (정량요건)	▶ 제1호~제3호를 모두 충족 또는 제4호를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피보험자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피보험자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 보다 <u>5%p 이상 낮은 경우</u> -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u>5% 이상 감소한 경우</u> -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보다 <u>20% 이상 증가하는 경우</u> *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폐업·도산 및 경영상 필요·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함 -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u>7% 이상 감소한 경우</u>
2유형 (보조지표)	▶ 1유형의 제1호~제3호 중 일부만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다음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력의 신규 취득 증감률 등 고용지표 - 고용보험 피보험자력의 신규 취득 대비 상실자 수 비율 등 실업지표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증감률 등 사업장 변경 - 지역 주력산업의 고용규모 증감 등 산업구조 변화 - 인구 순이동률 등 인구구조 변화
3유형 (정성요건)	▶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역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정량요건(1·2유형) 충족여부

❖ 울산 동구, 거제, 통영 등 3개 지역만 1유형(제4호 기준) 충족

* 나머지 지역 중 제1호~제3호 중 일부만 충족시키는 지역은 없으므로 2유형 검토 불필요

☞ 군산, 고성, 창원 진해구, 목포·영암 등은 3유형(정성요건) 검토 필요

- (제1호)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단위: 천명, %, %p)

구분	전국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영암군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시	경남 거제시	경남 고성군
'18.2~'19.1 피보험자수	13,205.6	46.7	54.9	31.5	21.0	22.0	16.7	71.7	10.2
'19.2~'20.2 피보험자수	13,704.9	47.3	57.7	33.5	23.1	23.2	16.8	75.2	11.2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8	1.1	5.1	6.5	9.9	5.3	0.7	4.8	9.4
전국평균 대비 ㉠	-	-2.6	+1.4	+2.7	+6.1	+1.5	-3.1	+1.1	+5.7
충족여부 (㉠<-5)	-	X	X	X	X	X	X	X	X

- (제2호)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

(단위: 천명, %)

구분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영암군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시	경남 거제시	경남 고성군
'18.2~'19.1 피보험자수	46.7	54.9	31.5	21.0	22.0	16.7	71.7	10.2
'19.2~'20.2 피보험자수	47.3	57.7	33.5	23.1	23.2	16.8	75.2	11.2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1	5.1	6.5	9.9	5.3	0.7	4.8	9.4
충족여부 (㉠<-5)	X	X	X	X	X	X	X	X

- (제3호)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사유)

(단위: 명, %)

구분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영암군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시	경남 거제시	경남 고성군
'18.2~'19.1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	3,647	3,696	2,268	331	2,200	1,732	4,759	381
'19.2~'20.2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	1,627	2,231	1,901	297	2,232	1,356	2,827	303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55.4	-39.6	-16.2	-10.3	1.5	-21.7	-40.6	-20.5
충족여부 ([㉠]<+20)	X	X	X	X	X	X	X	X

- (제4호)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 이상 감소한 경우

(단위: 천명, %, %p)

구분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영암군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시	경남 거제시	경남 고성군
'16.2~'17.1 피보험자수	66.4	56.4	30.4	24.3	22.0	18.5	98.8	10.6
'19.2~'20.2 피보험자수	47.3	57.7	33.5	23.1	23.2	16.8	75.2	11.2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28.9	2.3	10.4	-5.1	5.2	-9.5	-23.9	5.5
충족여부 ([㉠]<-7)	충족	X	X	X	X	충족	충족	X

☞ 1유형 충족: 울산동구, 거제, 통영
2유형 검토 대상: 없음

3 정성요건(3유형) 충족여부

<조선업 현황>

↳ 고용위기지역 대부분이 조선업이 주력산업인 지역으로 조선업 현황 분석 필요

□ 조선업 업황이 그간 소폭 개선되었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 '19년 총 수주량은 943만CGT으로 '18년(1,308만CGT)의 70% 수준으로 감소

○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의 실적은 개선되었으나 중형조선사* 수주 실적이 부진한 상황

* 성동조선해양(통영), STX 조선(창원 진해구) 등이 고용위기지역에 분포

- '19년 국내 중형조선사 수주량은 전년대비 23.2% 감소한 49만 CGT로 수주 실적이 악화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조선업계 불확실성 증대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국산 원재료 및 중국 소재 블록생산 업체가 생산한 블록 등 수입에 차질 발생

< 전문가·관계부처 모니터링 회의 내용 >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세계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장기적으로 발주량 자체가 감소할 가능성

☞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 선박 발주자들의 상담 문의가 급감하여 금년도 발주량의 불확실성 증가

<지역별 동향>

<1> 정량요건 충족지역

○ (울산 동구) 조선업 관련 사업장 및 종사자수 감소 지속, 지역경기 하락에 따른 자영업자 폐업 등 지역경제 침체

○ (거제) 해양플랜트 물량감소로 유희인력 증가, 숙련공·청년층의 외부 유출로 조선업 경쟁력 약화 우려

○ (통영) 성동조선 인수완료 예정('20.3월)이나 정상화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며, '19.下 실업률(5.0%)이 전국 평균(3.0%)보다 매우 높음

<2> 정량요건 미충족지역

- (군산) 조선·자동차산업이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채, 주요 제조업체의 경영위기로 인한 제조업 기반 지역경제 어려움 지속
 - OCI 폴리실리콘 생산중단 발표('20.2.10), 타다대우상용차 생산 감소
 - 명신(주)이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하여 전기차 생산을 추진 중이나, 본격적 생산케도에 들어서기까지 시차 존재
 - '19년 하반기 고용률은 55.6%로 전국 156개 자치단체 중 152위 수준
- (창원 진해구) 조선업 수주증가가 대형선박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중소형조선사 중심인 진해구의 조선업 피보험자수는 감소추세 지속*
 - * 연도별 피보험자 수(명): ('17년)6,601 → ('18년)6,112 → ('19년)5,897

< 전문가·관계부처 모니터링 회의 내용 >

☞ STX조선해양은 자구계획안에 따라 6개월 순환 무급휴직이 진행 중이며 '19년 수주량이 목표치(21척)를 크게 미달(6척)하여 지역 경제에 불안 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

- GM창원공장 가동률 하락, 두산중공업 대규모 희망퇴직 접수(전체 고용인원의 30% 대상) 등 인근지역 제조업 내 고용불안요소가 진해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 '19년 하반기 실업률 3.8%(전국 156개 자치단체 중 135위), 고용률 60%(전국 126위)로 고용지표상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 '19년 유효구인배율(유효구인인원수/유효구직자수)은 0.06으로 고용 위기지역 중에서도 특히 낮은 수준
- (고성) 고용지표 상 회복세가 확실하지 않으며 고용의 질 개선 불분명
 - 전년 동기 대비 실업률 상승(+1%p) 및 고용률 하락(-1.8%p)
 - 고성STX가 최근 주력하는 수리개조(리트로핏)분야는 단기인력을 많이 요함, 이로 인해 고용의 질이 낮아지고 변동성이 커짐*
 - * 조선업 관련 고용현황(명): ('16년)1,986 → ('17년)1,066 → ('18년)1,329 → ('19년)1,986

< 전문가·관계부처 모니터링 회의 내용 >

☞ 고성 지역 조선업 블록업체, 기자재 업체들은 거제·통영 지역 조선소에 납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같은 고용노동권역이라고 볼 수 있음

- (목포·영암) 조선업(현대삼호중공업·대한조선) 업황은 완만하게 호전 중이나, 협력업체들이 대거 입주한 대불국가산단 수출부진세는 지속
- 이로 인해 조선산업 밀집 지역인 대불산단 주변 아파트 미분양률 및 원룸·상가 공실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침체 지속

* '19년 하반기 목포의 고용률은 58.2%로 전국 138위 수준

4 검토의견

❖ 해당 지역에 밀집된 조선업 등 제조업의 본격적인 고용회복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7개 모든 고용위기지역의 지원기간을 연장(~20.12.31)하는 것이 타당

- (연장 필요성) 고용위기지역에 밀집되어있는 조선업 등 제조업 업황 불확실성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조선업 및 자동차 부품업 등 지역의 주력 산업에 속한 업체들이 여전히 침체된 상황
 -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 전반의 경제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
 - 특히, 코로나19가 확산으로 인한 지역 경제 타격이 가중되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 (지원기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및 조선업 업황의 회복 정도를 고려하여 모든 지역의 지원기간을 '20.12.31까지 연장
 - '18~'19년 조선업 수주량 등 업황이 소폭 개선된 점과 금번 연장시 '16.7월부터 4년 이상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점을 고려,
 - ☞ 연장기간을 1년이 아닌 금년 말까지로 지정 필요

IV.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안)

□ 지정 연장 기간: '20.12.31.까지 연장

○ (군산, 울산 동구, 거제, 고성, 통영, 창원 진해구) '20.4.5~'20.12.31

○ (목포·영암) '20.5.4~'20.12.31

□ (대상) 기존 7개 고용위기지역

□ (내용) 「고용위기지역 지원방안(18.4, 고용정책심의회)」 지원 지속
 <붙임4 참고>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으로 한다.

1.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정지·폐업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2. 제1호의 업종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그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의 수에 비하여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고용 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 등을 하는 기간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고시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지원기간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위기지역 등의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의 자료와 지원기간 동안의 운영 성과 및 평가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간의 만료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원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의 지원기간을 각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 ③ 고용위기지역 등의 연장된 지원기간 내에 지원 내용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 외에 현지 조사단 구성 등 지원기간 연장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제6조를 준용한다.

< 회의 개요 >

☐ **일시:** '20.2.25(화) 16:00~17:30

☐ **장소:** 시그니처타워* 중회의실2(지하1층)

* 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서울지방고용노동청 맞은편)

☐ **참석자**

○ (정부) 노동시장정책관(주재),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기재부, 산자부 등 8명

○ (전문가) 권우현(한국고용정보원), 이은창·이항구·이두희(이상 산업연구원)

* 전문가 별 전공 분야는 붙임 참조

☐ **주요내용**

○ 고용위기지역 고용 동향 파악

○ 고용위기지역 연장 필요성 등 토의

☐ **세부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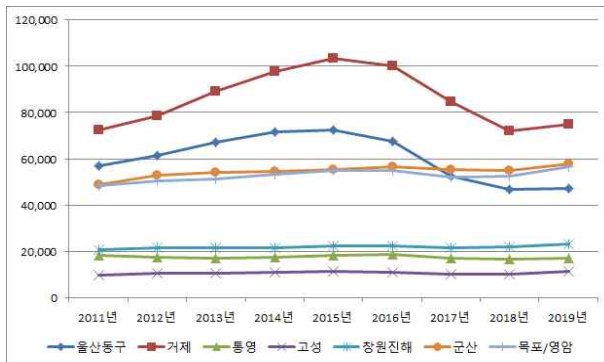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6:00~16:05	(5')	인사 말씀	노동시장정책관
16:05~16:15	(10')	지역 고용 동향	권우현 센터장
16:15~16:25	(10')	고용위기지역 연장요건 충족 현황 및 연장신청서 내용 보고	담당자
16:25~17:25	(60')	토의	참석자
17:25~17:30	(5')	마무리 말씀	노동시장정책관

1. [고용] 지표는 개선 중이나, 제조업은 위기 이전과의 격차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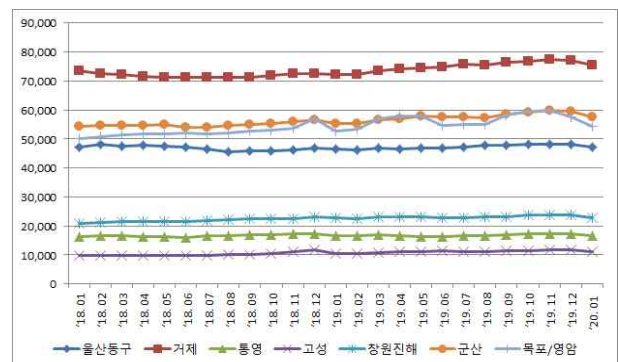
□ 조선업황이 회복되면서 조선업 밀집지역들의 고용상황이 저점을 지났으나, 제조업 침체 및 주요기업 철수 영향은 지속

○ (피보험자) '18년 중반 저점을 형성한 후 상승추세, 일부 지역(고성, 군산, 창원진해구, 목포·영암)은 과거 정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

< 연평균 피보험자 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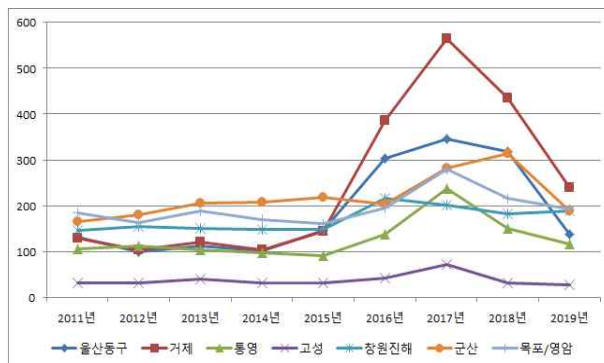
< 월별 피보험자 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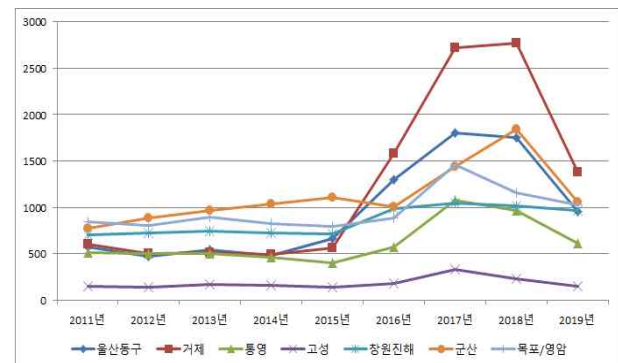
○ (실업급여) 대부분 지역에서 '17년에 정점(창원 진해구 '16년, 군산시 '18년)을 보인 후 하락추세로 전환하여 '19년에는 위기 이전 수준 회복

* '20.1월 약간 상승세를 보이는 바, 계절적 변동인지 추세적 반등인지 지켜볼 필요

< 연평균 실업급여 신청자 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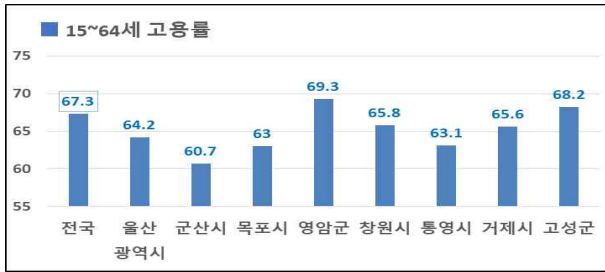
< 연평균 실업급여 지급자 수 추이 >



○ (고용률 · 실업률) 대부분 개선되는 추세이나, 영암군·고성군을 제외 하면 전국 평균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전인 '17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함

- 특히, 고성군은 전년동기대비 고용률 하락(-2.2%p) 및 실업률 상승(+1.0%p)

< '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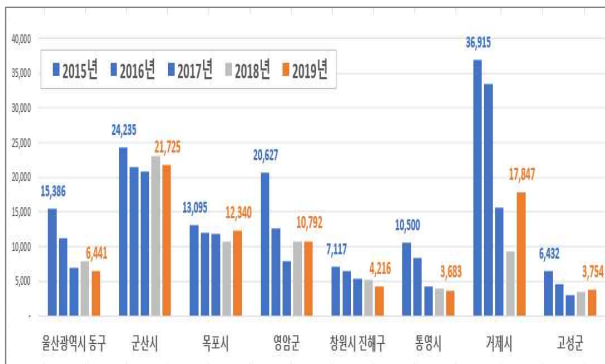
< '19년 하반기 지역별 실업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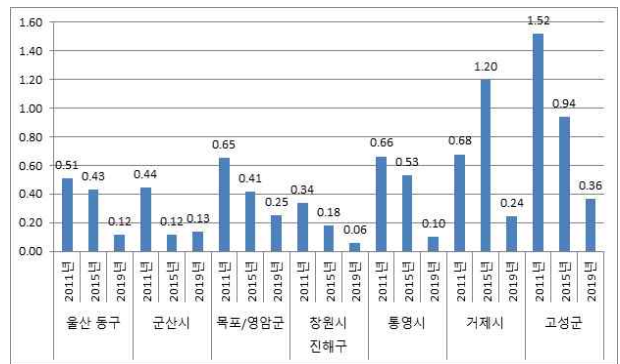
- (구인) 고용위기지역 내 기업의 신규구인인원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 유효구인배율(유효구인인원수/유효구직자수) 또한 전국에 비해 낮음*

* 유효구인배율: 군산(0.13), 창원 진해구(0.06), 통영(0.1), 울산 동구(0.12)
전국(0.49, '19.11기준)

< 지역별 연간 신규구인인원(명) >



< 유효구인배율 추이(연도별) >



2. [지역경제] 인구유출, 조선업 불안 등 지역경기 침체 지속 중

- (인구) 창원 진해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15년부터 인구 유출 추세, 특히 청년층 인구 유출이 심각하여 경제 동력 상실 우려

* 창원 진해구 인구 증가는 아파트 건립에 따른 입주자 증가로, 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증가하는 착시현상 유발

< 주민등록인구 현황 >

	2015	2016	2017	2018	2019	'15→'19년 증감률
군산	278,398	277,551	274,997	272,645	270,131	-3.0
울산 동구	174,963	174,514	169,605	164,642	159,656	-8.7
거제	255,828	257,183	254,073	250,516	248,276	-3.0
통영	139,168	138,160	135,833	133,720	131,404	-5.6
고성	55,284	54,703	54,060	53,243	52,276	-5.4
창원 진해구	185,733	187,313	189,898	193,376	193,622	4.2
목포	238,382	237,739	234,379	232,327	229,861	-3.6
영암	58,137	57,045	55,616	54,731	54,593	-6.1

- (조선업) 세계적 경기위축 및 미중무역분쟁으로 선박발주량 감소, 주력 선박종류에 따라 시황 회복 전망에 격차 발생
 - 선박 발주가 고기술선박(LNG·LPG선박 등) 중심으로 이루어져 중형 벌크선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형조선사와 범용기자재업체의 시황 회복 기대감 하락
 - 이에 따라, 중소형조선업·범용기자재업체 업황 회복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며 해당 사업장 소재 지역의 경기회복 기대 저하
- (음식숙박업) 대부분의 고용위기지역에서 산단 인근지역 중심으로 원룸 공실률 증가 및 음식점 폐업 증가를 겪고 있음
 - 소상공인·임대업자는 조선업황의 2차 파급효과 대상으로, 산업업황을 후행하는 특성을 보이며 아직 침체기에 머물러 있는 상황
 - ※ 원룸 공실률 변동('16년→'19년): 울산 동구(14%→36%), 목포(1.0%→2.8%)
 -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상점 매출급감·관광객 감소로 인한 관광업 타격이 발생하여 지역상권에 어려움 가중

3. [전문가의견] 코로나19 등에 의한 제조업계 불확실성 증대

- (조선업) 조선업 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지속
 - 전방산업인 해운업계의 침체로 인한 선박 발주량 감소 및 중국 소재 선박블록공장의 불안정한 조업에 따른 생산지연 발생
- (자동차산업) 부품 재고 소진 시 다른 공장의 가동 중지로 연결
 - ※ 현대車 1차 협력업체인 서진산업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부품수급 차질
→ 현대차 울산4공장 포터 생산라인 가동 일시 중단
- (지역별 현황) 발주 선종의 편중(LNG선)에 따른 조선업체 및 협력업체 간 업황 격차 발생

[창원 진해구]

- (조선사) 수주량 감소에 따라 진해구 소재 조선업체 자생 가능성 약화

- (자동차업계) 한국GM 창원공장 생산량 감소 및 생산라인 교체에 따라 사내 협력업체(585명, 19.12.31일자) 계약 만료 통지, 생산물량 감소예고(40만대→30만대 감축)에 따른 향후 감원 발생 가능성 有

[목포·영암]

- (선박블록업체) 조선사들이 선박블록을 사내 생산함에 따라 발주량이 감소하고, 이는 선박블록업체 밀집지역인 대불산단 침체로 이어짐

- (조선사) 삼호중공업·대한조선* 등 조선소는 비교적 양호

* '19년 15척의 선박을 수주해 '20년 건조 물량 확보하는 등 중형조선사 중 가장 우수한 실적

[고성]

- (기자재업체) 최근 수주가 LNG선 등 고기술 선종에 집중되며 LNG기자재업체와 범용기자재업체 간 발주량 격차 발생

* 탱커·벌크선 등 중국 조선소와의 가격경쟁에 밀려 수주 부진

- (고용)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위기 이전인 '15년 수준으로 회복* 하는 등 양호한 고용지표를 보이나, 고용의 질은 불분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1,115명('15) → 9,968명('17) → 11,167명('19)

** 고성STX가 최근 집중하는 수리개조 분야(리트로핏)는 주로 단기인력을 요함

[군산]

- (제조업)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이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채, 주요 제조업체의 경영위기로 인한 제조업 기반 지역경제 침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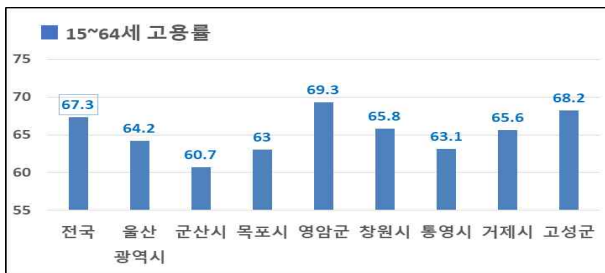
- 명신(주)이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한 후 전기차 생산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나, 계획 물량 소화 가능성에 의문
- 최근 OCI 폴리실리콘 생산중단 발표, 1~2년 내 소재 생산 중단으로 인한 파급효과 발생 가능성 존재

1. 고용률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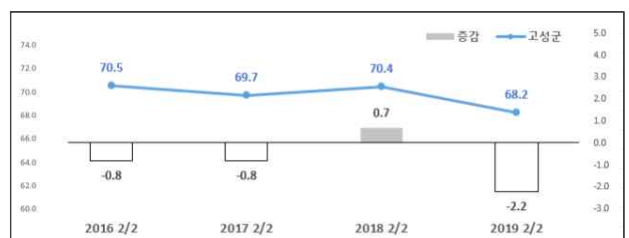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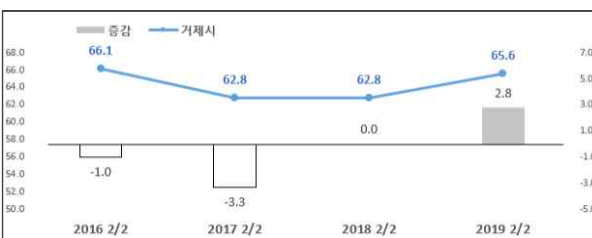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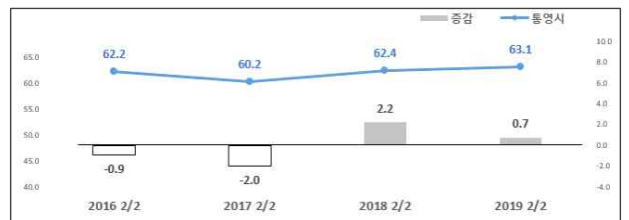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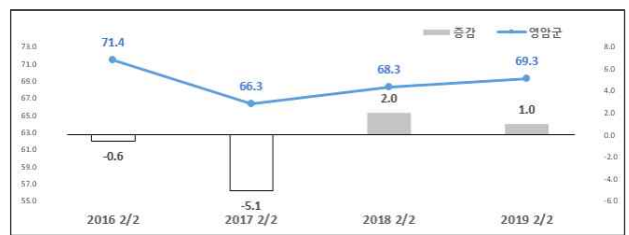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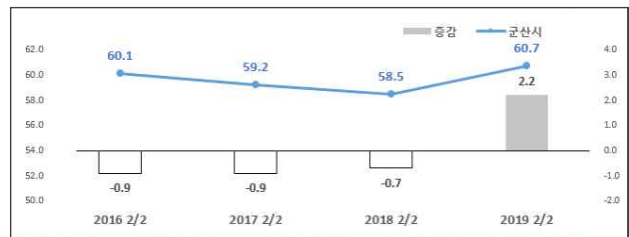
□ 최근 조선업 업황이 개선됨에 따라 대부분의 고용위기 지역은 고용률, 실업률 등 고용지표가 전년동기대비 개선

○ 다만, 영암군·고성군을 제외하면 전국 평균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고용위기 지역 지정 이전인 '17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함

< '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률(%) 및 실업률(%) 비교 >



< 고용위기 지역의 고용률(%), 15~64세) 및 증감(%)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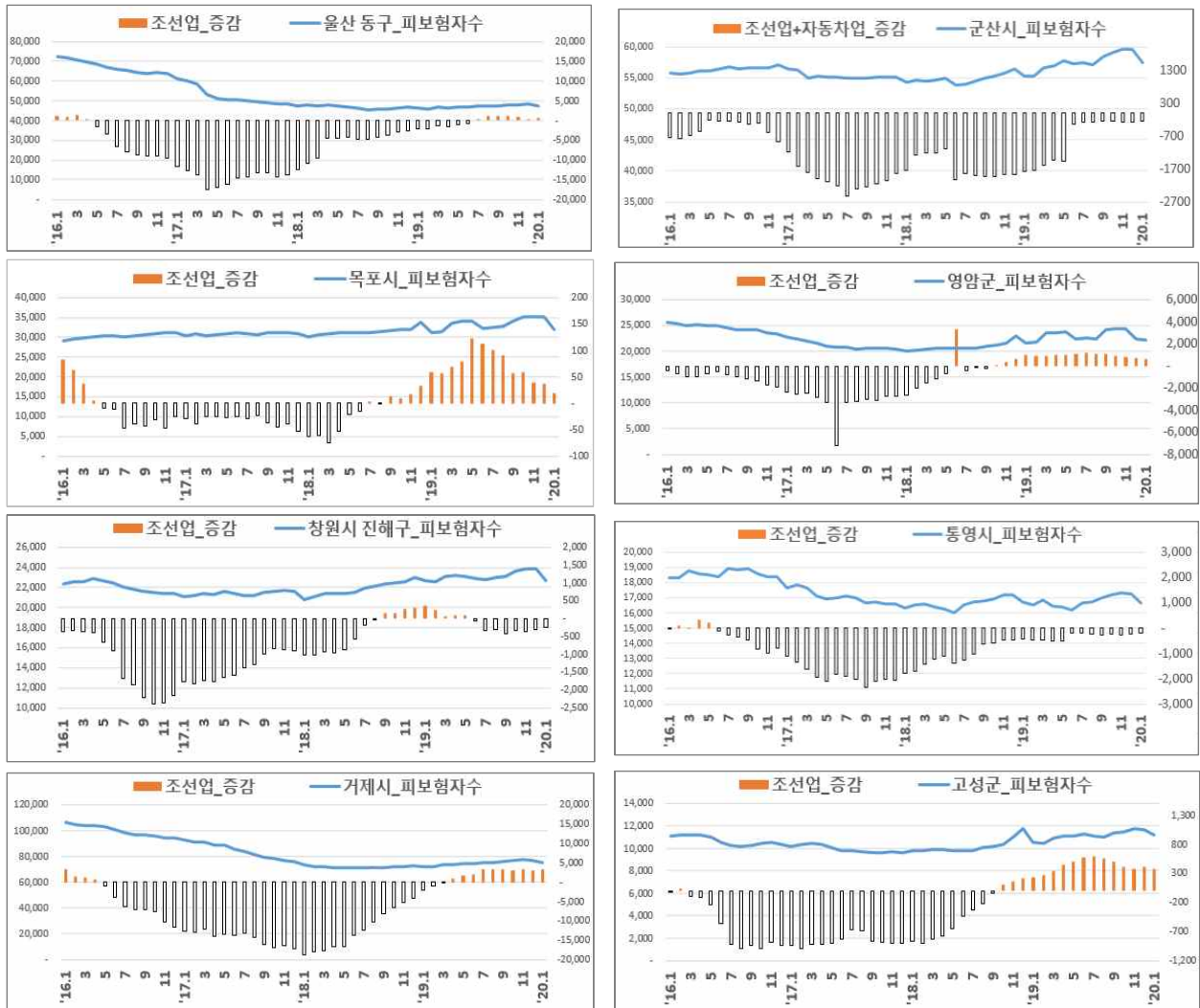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 피보험자수 및 구직급여신청자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최근 주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증가 폭 개선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폭이 완화되거나 증가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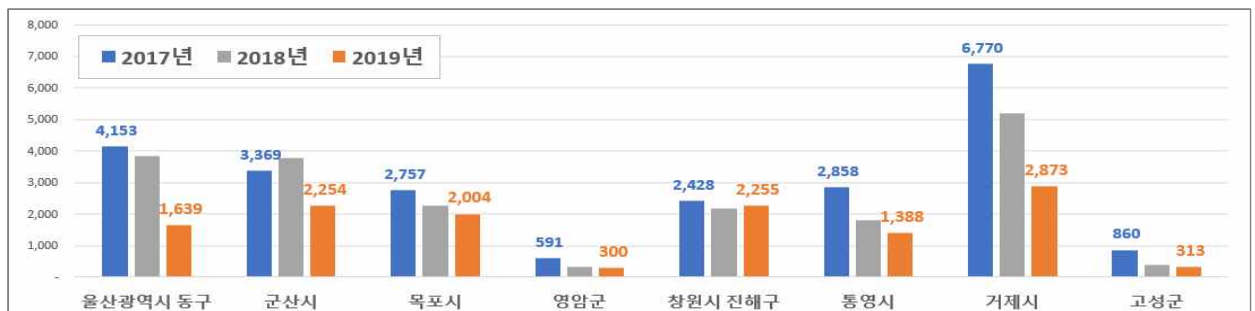
< 고용위기 지역의 피보험자수(명) 및 주요 제조업 증감(명) 추이 >



* 자료: 고용보험통계(고용노동부)

- '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에 따른 구직급여 신청자수는 모든 지역이 고용위기 지역 지정 이전 수준으로 감

< 지역별 연간 실업급여 신청자수(명, 상실사유 22-23코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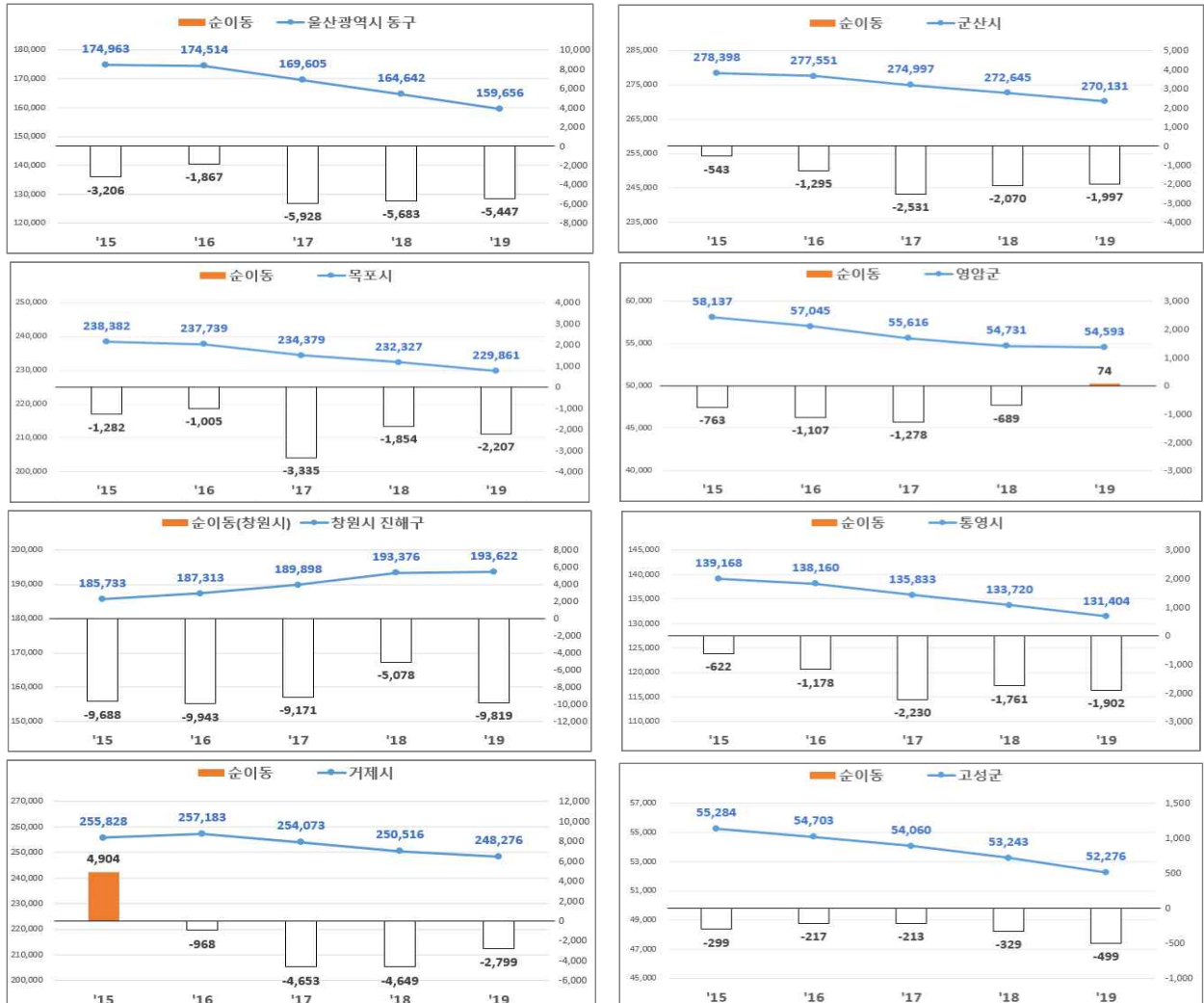


* 자료: 고용보험통계(고용노동부)

3. 인구 및 구인수요

- 고용위기 지역 내 일자리 감소와 함께 인구 유출이 발생하며, 인구 감소세 지속(창원 진해구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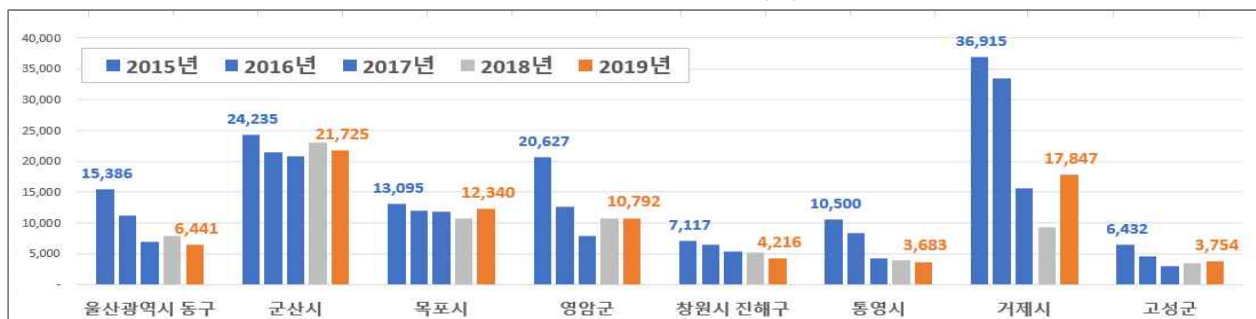
< 고용위기 지역의 주민등록인구(명) 및 순이동(명, 전입-전출) 추이 >



* 자료: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안전부), 국내인구이동통계(통계청)

- 고용위기 지역 내 기업들의 신규구인인원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며 호황기였던 '15~'16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함

< 지역별 연간 신규구인인원(명) >



* 자료: 워크넷 구인구직 통계(고용노동부)

붙임 4

고용위기지역 지원 주요 내용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고용유지 지 원 금 (휴업급여 등)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2/3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2/3~3/4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무급휴직 근로자 지 원 금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6.6만원
	지원요건	① 무급휴직 실시(9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3개월)		① 무급휴직 실시(3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직업훈련	사 업 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훈련비 지원 단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 배움카드	①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자부담율 최대 55%) ② 훈련상담 기간 2주		①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자부담율 0~20%) ② 훈련상담 기간 1주
	훈련연장 급여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의 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생 계 비 대부한도	1인당 1천만원		1인당 2천만원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유예 × 체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유예 ○ 체납처분 집행유예 ○
고용보험 자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1인당 3만원)		면제
취업성공패키지II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지역내 모든 구직자 소득요건 면제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용자	소득요건 (*)	(임금감소·소액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0년 월 181만원) (이외 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0년 월 259만원)		(임금감소·소액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0년 월 222만원) (이외 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0년 월 317만원)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한 도 액	(임금채불생계비) 1천만원 (자녀학자금) 연 5백만원		(임금채불생계비) 2천만원 (자녀학자금) 연 7백만원
	대 상 자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자녀		(자녀학자금)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 자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지원대상 산업 고시 필요		1년간 월임금 50% (대규모기업 1/3)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인당 900만원한도 3년간 지원		1인당 500만원 추가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각 부처 운영 13개 취업지원 프로 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
체당금	조력지원	상시 10명미만의 사업장으로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 요건은 동일)
	공인노무사 지원대상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28)」에 따라 한시적
(‘20.3.9.~7.31.) 으로 임금감소·소액생계비 등 모든 생활안정자금 용자 시 소득요건을 3인가구
중위소득 이하(‘20년 월 388만원)로 완화